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	수정 후																		
341p	오타	수정 전	일반적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																			
			<table><tr><th>종합소득 과세표준</th><th>세 율</th></tr><tr><td>1,400만원 이하</td><td>과세표준의 6%</td></tr><tr><td>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</td><td>84만원 + 1,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%</td></tr><tr><td>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</td><td>624만원 + 5,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%</td></tr><tr><td>8,800만원 초과 ~ 1.5억원 이하</td><td>1,536만원 + 8,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%</td></tr><tr><td>1.5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</td><td>3,706만원 +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8%</td></tr><tr><td>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</td><td>9,406만원 +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%</td></tr><tr><td>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</td><td>1억 7,406만원 +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%</td></tr><tr><td>10억원 초과</td><td>3억 8,406만원 +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5%</td></tr></table>		종합소득 과세표준	세 율	1,4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6%	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	84만원 + 1,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%	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	624만원 + 5,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%	8,800만원 초과 ~ 1.5억원 이하	1,536만원 + 8,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%	1.5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	3,706만원 +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8%	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	9,406만원 +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%	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억 7,406만원 +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%	10억원 초과	3억 8,406만원 +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5%
			종합소득 과세표준	세 율																		
			1,4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6%																		
			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	84만원 + 1,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%																		
			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	624만원 + 5,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%																		
			8,800만원 초과 ~ 1.5억원 이하	1,536만원 + 8,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%																		
			1.5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	3,706만원 +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8%																		
			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	9,406만원 +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%																		
			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억 7,406만원 +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%																		
10억원 초과	3억 8,406만원 +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5%																					
일반적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종합소득 과세표준</th><th>세 율</th></tr><tr><td>1,400만원 이하</td><td>과세표준의 6%</td></tr><tr><td>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</td><td>84만원 + 1,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%</td></tr><tr><td>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</td><td>624만원 + 5,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%</td></tr><tr><td>8,800만원 초과 ~ 1.5억원 이하</td><td>1,536만원 + 8,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%</td></tr><tr><td>1.5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</td><td>3,706만원 +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8%</td></tr><tr><td>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</td><td>9,406만원 +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%</td></tr><tr><td>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</td><td>1억 7,406만원 +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%</td></tr><tr><td>10억원 초과</td><td>3억 8,406만원 +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5%</td></tr></table>		종합소득 과세표준	세 율	1,4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6%	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	84만원 + 1,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%	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	624만원 + 5,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%	8,800만원 초과 ~ 1.5억원 이하	1,536만원 + 8,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%	1.5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	3,706만원 +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8%	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	9,406만원 +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%	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억 7,406만원 +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%	10억원 초과	3억 8,406만원 +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5%			
종합소득 과세표준	세 율																					
1,4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6%																					
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	84만원 + 1,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%																					
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	624만원 + 5,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%																					
8,800만원 초과 ~ 1.5억원 이하	1,536만원 + 8,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%																					
1.5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	3,706만원 +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8%																					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	9,406만원 +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%	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억 7,406만원 +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%																					
10억원 초과	3억 8,406만원 +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5%																					
수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
숫자 오류																						
347p [㉠ 공제 가능 의료비] 중	개념,공식-설명	수정 전	㉠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																			
		수정 후	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																			
		수정사유	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5 제1항 제7호 개정 [2024년 2월 29일]																			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